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윤준병 · 전종덕
조승래 · 김기표 · 이훈기
박균택 · 강득구 · 민병덕
서미화 · 권향엽 · 송재봉
이정현 · 김 윤 · 김한규
윤종균 · 김영진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,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,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, 임시조치 이

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.

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,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해당 미성년자의 사생활,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

⑨ 정보게재자가 제8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유지하되,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⑩ 제7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, 침해사실의 소명 기준, 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 및 삭제의 절차, 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유지·해제, 그

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중 “제44조의12제3항의”를 “제44조의2제7항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의 삭제 요청, 제44조의12제3항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해당 미성년자의 사생활,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제7항에 따라 요청한 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</u> <u>⑨ 정보게재자가 제8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정</u></p>

둔다.

② ~ ④ (생략)

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